



「20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

형사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1)

| 오상훈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 QR코드를 통해
"형사법의 끝판
왕" 형사법 오상
훈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제영역: 서론]

0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므로 노역장 유치는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중 제4항의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③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기준 처벌규정인 특정 범죄 기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임 필요는 없으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한다.
- 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된다.

- ① ①(X) ②(O) ③(O) ④(O) ⑤(X)
② ①(O) ②(X) ③(O) ④(X) ⑤(X)
③ ①(O) ②(X) ③(X) ④(O) ⑤(O)
④ ①(O) ②(X) ③(X) ④(X) ⑤(O)

정답: ①

난이도: 중

- ⑥ (X)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현재결 2017.10.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 ⑦ (O) 대판 2018.11.29, 2016도14781 :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 ⑧ (O) 대판 2018.2.13, 2017도19862 ⇨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원칙에 위반 X
- ⑨ (O) 대판 2020.2.27, 2019도18891
- ⑩ (X)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 자체를 파기, 손상, 유출하는 등의 행위와 그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공공기록물법 제21조는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한 복제본 제작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21.1.14, 2016도7104).

[출제영역: 범죄론]

02. 범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내란죄는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그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 ③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볍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즉시범이다.

정답: ④ 난이도: 하

- ① (O) [12·12군사반란사건] 대판 1997.4.17, 96도3376 전원합의체
② (O) 대판 2005.9.9, 2005도3857
③ (O) 대판 1997.8.29, 97도675
④ (X)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계속범). 따라서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이는 공범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8.30, 2012도6027).

[출제영역: 범죄론]

03.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②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 ③ 행위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량을 작량감경하는 경우에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친고죄의 공소제기에는 직접행위자 외에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

정답: ④ 난이도: 하

- ① (O) 대판 1995.7.28, 94도3325
② (O) 대판 2018.8.1, 2015도10388 : 과실책임설
③ (O) 대판 1995.12.12, 95도1893 : 처벌은 독립적이므로
④ (X)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즉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 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

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즉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3.12, 94도2423).

[출제영역: 범죄론]

04.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진정부작위범은 그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하며, 형법도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단순한 도덕상,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인 의무는 성문법, 불문법, 공법, 사법을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 ④ 부진정부작위범을 작위범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 외에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을 요하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와 같이 직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과 종범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①

난이도: 상

- ⑥ (O) [세월호 사건]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 ⑦ (X)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다수설), 우리 형법은 퇴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의 경우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⑧ (O) [세월호 사건] 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

- ⑨ (X)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은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이다. [참고판례] 업무방해죄와 같이 직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작위와 동일시할 수 있어야 한다(대판 2017.12.22, 2017도13211).

- ⑩ (X)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부작위만으로는 범행결의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증인적 지위 있는 자 즉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하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①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②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판 2008.3.27, 2008도89).